

No. 19

행정 명령

주 재난 비상사태 교통시설 복원과 관련된 조항 임시 중단

2011년 8월 25일에 나는 뉴욕주의 재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 명령 No. 17을 발행했으므로;

이제, 그러므로, 나, ANDREW M. CUOMO, 뉴욕 주지사는, 행정법 (Executive Law) 2-B조 섹션 29-a에 의해, 주 재해 비상사태기간동안 어느 기관의 법규, 지방법, 조례, 명령, 규칙이나 규정, 또는 부분의 특정 조항이 재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막거나, 방해하거나, 지연시킨다면 그 조항을 임시로 보류할 권한에 따라, 이로써 이 행정 명령이 발행된 날짜로부터 다음의 법안들을 임시로 중단합니다:

고속도로법 섹션 38(1), (2), 그리고 (3), 및 경제개발법 4-C 조항 (Economic Development Law), 교통 위원이 긴급 계약 체결을 인가할 필요가 있고 계약상의 설계 및 건설 서비스를 결합하고, 필요한 경우 그러한 서비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범위까지;

주 재정법 섹션 112, 주 헌법 (State Constitution) 섹션 1, V 조항에 일치하는 데까지, 그리고 교통 위원이 주 계약인들에게 또는 긴급 계약 체결에 추가의 일, 현장 및 시간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범위까지;

주 재정법 섹션 136-a (Finance Law), 교통 위원이 한 계약의 설계 및 건설 서비스의 결합이 필요하거나, 설계 및 건설 점검 서비스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범위까지;

주 재정법 섹션 163, 교통 위원에게 기준 조달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필요한 물품 및 재료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범위까지; 그리고

환경 보존법 8 조항 (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), 및 뉴욕 규칙 및 규정법 타이틀 6의 파트 617과 타이틀 17의 파트 15 (New York Code of Rules and Regulations), 교통 위원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구조 및 시설의 교체, 복구, 및 재건을 위해 상황에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작업이 시급하게 필요하고, 또한 환경에 최소한의 변화 또는 방해를 일으키도록 시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범위까지.

이천십일년 구월 일일 Albany시에서 내게 주어진

권한 및 주 인증의 권한에 의함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실장